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2. 14. ~ 2. 23.)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25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24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4. 2. 23.)
의회운영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석균 의원	원안가결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호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8)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순옥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미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수정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수 의원	원안가결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4. 2. 23.)
안전건설 위원회 (4)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박기영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속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지영 의원	원안가결
교육 위원회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성운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승진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엄기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영옥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원안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5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4. 2. 23.(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원주5)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 및 각하 여부의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개정(2023.8.16.) 및 시행(2024.2.1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시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③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④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한창수 의원(부의장·국민의힘·횡성1)



정책연구용역 시행부서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자문형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상황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적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함께 적시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 공동발의 : 한창수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횡성1),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1),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심영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류인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5)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에 재산소관 부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설명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강정호 의원



한창수 의원



심영근 의원



김길수 의원



류인출 의원



문관현 의원



임미선 의원



최승순 의원



하석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로서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 · 출산 · 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④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 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12조제4항의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게 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 · 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 · 수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현행 조례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및 제8조의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하고,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 :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2005년 도 자체사업으로 도입된 위스타트마을 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위스타트마을 사업은 종료되었기에 강원 위스타트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하며,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 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춘천5)



강원특별자치도 내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③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춘천5)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 위원직 구성 분야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웰니스 관광”이란 행복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하고,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로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② 축산환경 개선 사업 중 악취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농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악취저감제 사용,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및 캠페인, 축산환경 관련 조사·연구·교육·세미나·컨설팅 등 기술개발 등의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무소속 · 영월2),
-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에이치활동 단체”란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초 영농 기반 조성 지원, 창업 관련 과제 활동 지원, 농업 경영 능력 및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등의 사업을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대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대표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최중수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대현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홍성기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하며,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점검·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3)

공동발의 :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는 소방기본법을 정비하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제거와 이동 등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①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②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③에 따라 비용을 지급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박기영 의원



최재민 의원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춘천6)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5 일부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고,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 전세피해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 :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동해2)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하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1)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고,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사항 등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장실 등”이란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하고,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하며,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하고,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하며,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또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 · 학교 · 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그리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출석한 학생을 졸업 전에 정식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산업체를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고,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영욱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흥천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하고, “교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과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②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학생교육의 지원, 교육·학습 활동 보호, 평생교육의 지원,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 등의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③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